# 내부거래위원회 규정

# 제1장총 칙

## 제1조 (목적)

이 규정은 주식회사 엠씨넥스(이하 "회사"라 한다)의 내부거래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#### 제2 (적용범위)

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, 정관 또는 이사회규정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따른다.

#### 제3조(권한)

위원회는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, 이사회 부의를 위하여 사전에 검토가 필요한 사항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 상법에서 이사회 승인으로 규정한 내부거래와 관련된 사항을 심사한다.

#### .

# 제2장 구 성

#### 제4 (구성)

- ① 위원회 위원(이하 '위원'이라 한다)의 선임 및 해임은 이사회의 결의로 한다.
- ② 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며, 위원회의 3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이어야 한다.
- ③ 위원의 사임, 사망 등의 이유로 인하여 제2항의 인원수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위원회의 구성 요건에 충족되도록 하여야 한다.

## 제5조 (위원장)

- ① 위원회는 위원회를 대표할 위원장을 사외이사인 위원중에서 결의로 선정한다.
-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, 위원회 회의 시 의장이 되고, 위원회의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한다.
- ③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위원회에서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## 제3장 회 의

### 제 6 조 (종류)

- ① 위원회는 정기위원회와 임시위원회로 한다.
- ② 정기위원회는 매 반기 1회 개최하고, 임시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.

## 제7조 (소집권자)

-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.
- ② 각 위원은 위원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. 위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소집을 청구한 위원이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.

#### 제8조 (소집절차)

- ① 위원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고 24시간 전에 이를 각 위원에게 문서, 전자문서, 구두, 기타 발송 및 수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식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
- ② 위원회는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제1항의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열 수 있다.

#### 제9조 (결의 방법)

- ①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.
- ② 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이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.
- ③ 위원회의 의안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. 이 경우 행사할 수 없는 의결권의 수는 출석한 위원의 의결권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

## 제10조 (부의 사항)

위원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- 1.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상법에서 이사회 승인사항으로 규정한 내부거래
- 2. 기타 내부거래와 관련하여 이사회 또는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

#### 제11조 (관계인의 의견청취)

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임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

## 제12조 (통지의무)

위원회는 결의된 내용이 있는 경우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## 제13조 (의사록)

- ①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.
-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, 경과요령과 그 결과,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하는 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.

# 제14조 (간사)

- ① 위원회에는 간사를 둔다.
- ②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고, 위원회의 사무전반을 관리한다.

# 제15조 (규정의 개폐)

이 규정의 개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다.

부칙

# 제1조 (시행일)

본 규정은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